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88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 박성민·김위상·강민국

박덕흠 • 구자근 • 김기현

김상욱 · 서범수 · 이상휘

김정재 · 서일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(採鑛)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(採取)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,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,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

률안」(의안번호 제408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하여야 할 것임.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2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해저광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"해저광물자원"이라 한다)

제143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해저광물자원: 해저광물자원을 채취(採取)하는 자제144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해저광물자원: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에 따른 채취권이 설정된 구역과 채취한 해저광물자원이 최초로 반입되는 장소의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소재지제14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해저광물자원: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) 제142조부

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취하는 해저광물자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2조(과세대상) ① (생 략)	제142조(과세대상) ① (현행과 같
	<u>⇔</u>)
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	2
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	
각 호와 같다.	
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:	1
다음 각 목의 것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라. 해저광물자원으로서 대통
	<u>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</u>
	이 장에서 "해저광물자원"
	<u>이라 한다)</u>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제143조(납세의무자) 지역자원시	제143조(납세의무자)
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	
호와 같다.	
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	1
의 납세의무자: 다음 각 목의	
자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라. 해저광물자원: 해저광물
	자원을 채취(採取)하는 자
2. •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제144조(납세지) 지역자원시설세	제144조(납세지)

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 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부과한다.

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:
다음 각 목의 납세지
가. ~ 다. (생 략)
<신 설>

2. · 3. (생략)
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 제 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 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1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해저광물자원: 「해저광
물자원 개발법」에 따른
채취권이 설정된 구역과
채취한 해저광물자원이 최
 초로 반입되는 장소의 소
재지 등을 고려하여 행정
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재
지
<u>-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
]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-
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해저광물자원: 채취된 광물
<u>가액의 1천분의 10</u>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